

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4. 10. 22 선고 2024가단1034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승호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10. 8.

판결 선고2024. 10. 22.

주 문

1. 가.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/7 지분에 관하여, 피고와 C 사이에 2023. 4. 5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,764,28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원고에게 4,764,2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가. 별지1 목록 제1,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7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23. 4. 5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C에게 위 제2의 가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'청구원인', '변경된 청구원인' 부분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판사서동민

별지